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제정) 이유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특정 빈집에 대한 신고·행정지도·조치 절차, 빈집의 매입 등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972호, 2020. 2. 11. 공포, 2020. 8. 12. 시행)되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장은 1년, 사업자는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6972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안 제60조) 및 계획 수립 절차·방법을 규정(안 제60조의2)

1) (개정 사유) 법 제6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중략)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④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① 및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②,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③

① 철거·개축·수리 등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계획, 빈집정비 지원 내용·기준,

빈집정비 상담·지도에 관한 계획 등

②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③ 빈집정비계획은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역 주민은 의견서 제출 가능

나. 빈집실태조사의 내용(안 제60조의3), 대행기관(안 제60조의4), 조사의 방법·절차(안 제60조의5)를 규정

1)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중략)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빈집실태조사에 포함될 사항^①과 대행기관^② 및 방법·절차^③

① 빈집의 물리적안전상태, 인접 건축물·도로의 현황, 빈집의 설계도서의 유무·

내용 등 현황, 빈집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등의 의견, 빈집의 발생사유 등

②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공사 등

③ 빈집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에 14일 이상 고시

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60조의6 제60조의7)

1) (개정 사유) 법 제64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설

법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중략)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①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②

① 주민등록 전산정보, 지방세, 전기·수도요금, 건축물대장 사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사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부동산 가격 등

②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공사 등

라.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현장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61조)

1)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3에 따른 특정빈집 신고와 현장조사의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신설

법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① ...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
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생략)

2) (주요 내용)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 특정빈집 여부 결정** 후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특정빈집의 신고는 '특정빈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빈집 여부를 결정

마.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절차(안 제61조의2)와 철거보상비를 규정(안 제61조의3)

1)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5에서 정하는 조치명령과 직권철거 및
철거 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 **(중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중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2) (주요 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①, 특정빈집의 철거절차^② 및 철거보상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③

① 당초 이행기간의 종료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가능

② 직권철거가 결정되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통지서를 송달

③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규정

바. 빈집의 매입 기관 및 방법·절차를 규정(안 제61조의4)

1) (개정 사유) 법 제6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

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빈집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내용)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공기업으로 정하고, 그 밖의 방법·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사. 빈집정비업무 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82조의2)

1) (개정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 업무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위임 규정 마련 필요

아. 과태료 부과기준 내 인용조항 수정(안 별표4 제2호제마목)

- 1)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경우’를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경우’로 개정
- 2) 제89조제4항이 조항 신설로 제89조제5항으로 변경 됨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와 제61조를 삭제하고, 제60조부터 제60조의7 및 제61조부터 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의 기준·대상 및 내용
2. 법 제65조의5에 따른 철거·개축·수리 등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계획
3.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빈집정비 지원제도 등의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빈집 철거 후 대지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계산착오·오기·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60조의2(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미리 계획의 주요 내용 및 공람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지역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60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2. 빈집의 대지에 직접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시설 등의 현황
3. 빈집의 설계도서의 유무·내용 등 현황
4. 빈집의 발생사유
5. 빈집의 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등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0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6.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제60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4조의2에 따른 빈집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빈집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2. 빈집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3.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4.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4조의6에 따라 구축된 빈집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0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64조의6제7항에 따라 법 제64조의6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사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사본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 정보 및 관련 통계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
- ② 법 제64조의6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60조의7(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문기관) ① 법 제6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감정원
 3.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방공사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4조의6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

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방법 및 현장조사 등)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자에게 신고하려는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동영상 등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정빈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심의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알려야 한다.

제61조의2(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비기간의 연

장이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철거 시기 등을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써 알려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직권철거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의3(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법 제65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② 빈집 소유자는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의4(빈집의 매입 등) ① 법 제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할 경우, 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③ 빈집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2(농어촌 빈집정비 업무의 지침 고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기준

3.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빈집정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별표 4 제2호마목 중 “제89조제4항을 “제89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0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의 기준·대상 및 내용 2. 법 제65조의5에 따른 철거·개축·수리 등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계획 3.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빈집정비 지원제도 등의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빈집 철거 후 대지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계산착오·오기·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u><신 설></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0조의2(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 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미리 계획의 주요 내용 및 공람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u> <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지역 주민에게 그 사유</u>

현행	개정안
<u><신설></u>	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60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 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2. 빈집의 대지에 직접 인접한 도 로 및 건축물·시설 등의 현황 3. 빈집의 설계도서의 유무·내용 등 현황 4. 빈집의 발생사유 5. 빈집의 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 자등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신설></u>	제60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 관)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 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 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 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6.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제60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4조의2에 따른 빈집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를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빈집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2. 빈집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3.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4.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

현행	개정안
<u><신설></u>	<u>기관(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u> <u>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의 실시</u><u>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u> <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4조의6에 따라 구축된 빈집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u> <u>제60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u> ① 법 제64조의6제7항에 따라 법 제64조의6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1. 법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u>

현행	개정안
<신설>	<u>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u>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사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사본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 ② 법 제64조의6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u>제60조의7(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문기관) ① 법 제6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1. <u>한국농어촌공사</u> 2. <u>한국감정원</u> 3. <u>한국국토정보공사</u> 4. <u>지방공사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u> 5. <u>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u> 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4조의6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제61조(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방법 및 현장조사 등) ① <u>법 제65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u>

현행	개정안
<신설>	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자에게 신고하려는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동영상 등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정빈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심의 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알려야 한다.
<신설>	제61조의2(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현행	개정안
제60조(빈집 철거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일을 명시한 철거통지서를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1조(철거보상비 지급)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상비는 「감정평	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비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철거 시기 등을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써 알려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의3(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법 제65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

현 행	개 정 안
<u>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u>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u> <u>② 빈집 소유자는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u> <u>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u>

현행	개정안
<u><신설></u>	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의4(빈집의 매입 등) ① 법 제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할 경우, 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③ 빈집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2(농어촌 빈집정비 업무의 지침 고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신설></u>	

현행	개정안
	<u>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u>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u> <u>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기준</u> <u>3.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u>4. 빈집정비사업의 시행</u> <u>5. 그 밖에 빈집정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u>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법 제132조 제1항제1호	20	40	80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2호	20	40	80
다. 법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2호의2	20	40	80
라. 법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3호	20	40	80
마.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4호	20	40	80
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5호	20	40	80
사. 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6호	20	40	80
아.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7호	20	40	80
자. 법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132조 제1항제8호	20	40	80

〈 소 관 부 서 명 〉

지 역 개 발 과 (제60조, 제60조의2~제60조의7, 제61조, 제61조의2~제61조의4, 82조의2)	
연 락 처	(044) 201-1558, 1559
농 촌 산 업 과 (별 표 4)	
연 락 처	(044) 201-1590, 1591